

<p>로 特殊性이 있고, 더욱 깊이 있는 審查가 要求되는 4件에 대해서는 다음 會期에 處理 토록 審查保留하였습니다.</p> <p>이상 報告드린 대로 意見聽取 案件은 한 件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세밀하고 深度 있는 審查를 하였음을 報告를 드립니다.</p> <p>案件別 審查結果는 配布하여 드린 審查報告 書를 參照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議員 여러분께서는 우리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查한 內容 대로 意見聽取의 件이 可決될 수 있도록 議員 여러분의 鉅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審查報告를 마치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p> <p>○議長 白昌鉉 수고했습니다.</p> <p>그러면 都市計劃案에 대한 議會意見聽取</p>	<p>29件에 대하여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查報告 한 內容과 같이 市議會 意見으로 각각 採擇하고자 합니다.</p> <p>議員님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p> <p>異議 없으시면 이상 29件이 각각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 심사보고서</p>
---	---

## 1. 도시계획안 제출 및 회부사항

○총 33건

— 전화기 보류 : 4건

— 금화기 추가(신규) : 29건

제 출 일 자	제 출 건 수	위원회 회부일	회 부 건 수	제 안 자
'93. 8. 26	1	'93. 8. 28	1	서울특별시장
'93. 9. 16	1	'93. 9. 25	1	"
'93. 10. 15	2	'93. 10. 16	2	"
'93. 10. 30	3	'93. 11. 1	3	"
'93. 11. 2	1	'93. 11. 5	1	"
'93. 11. 19	1	'93. 11. 29	1	"
'93. 12. 3	9	'93. 12. 6	9	"
'93. 1. 11	4	'94. 1. 26	4	"
'93. 1. 25	11	'94. 2. 2	11	"
9회	33건		33건	

## 2. 상정일자

제6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 상정, 의결('94. 2. 21)

## 3. 제안이유 및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계획국장 최재범

(도시계획국소관 20건)

주택국장 양 갑

(주택국소관 13건)

## 4.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안건별 내용 별첨

<p>5. 심사결과</p> <p>○서울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이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다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였는 바,</p> <p>○결정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이익에 관계되는 시설은 시장 결정안대로 동의 처리토록 하고</p> <p>○심사중 결정안에 대한 현지확인이나 재심사가 요구된 사항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보류하였음.</p> <p>6. 위원회 심사결과(총 33건중)</p> <p>○서울시장의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 29건</p> <p>○금회기 보류 : 4건</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건안건별심사결과</p> <p style="text-align: center;">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29건)</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padding: 2px;">의 안</td> <td style="padding: 2px;">830</td> </tr> </table>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p> <p>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p> <p>○위치 : 노원구 월계동 1번지 9호 일대</p>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 20,300㎡(국·공유지 8,772㎡, 사유지 11,528㎡)</li> <li>• 도시계획사항 : 자연녹지지역, 하천(일부)</li> </ul> <p>4. 검토의견</p> <p>(요지)</p> <p>○노원구 월계동 1번지 7호 일대의 동부고속도로건설로 발생될 폐천부지 20,300㎡에 대하여 현재 건설중인 동부고속도로가 완성되는 '93. 12이후, 이 폐천부지를 양여받을 것을 전제로 이 지역에 사전 균린공원을 지정코자 하는 내용임.</p> <p>(현황)</p> <p>○이 공원 결정 예정지는 월계 시영아파트지역 전면 25m도로와 동부고속도로의 중간에 있어, 그 중 11,528㎡는 14인이 소유한 사유지이며, 나머지 8,772㎡는 국·공유지이나 국·공유지상에는 3동의 무</p>	의 안	830	<p>하므로 공원용지를 해제코자 함.</p> <p>4. 검토의견</p> <p>○은평구 불광동 445-39 소재 갈현근린공원 일부에 이 공원과 인접해 있는 승덕고등학교 용지(학교시설)가 공원용지와 종복으로 결정되어 있어 공원용지를 회복코자 하나 학교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공원용지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원용지를 해제코자 하는 내용임.</p> <p>○이 공원용지 해제는 대체 공원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현지 확인 후 처리함이 가능 것으로 사료됨.</p> <p>5. 심사결과</p> <p>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padding: 2px;">의 안</td> <td style="padding: 2px;">840</td> </tr> </table>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p> <p>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p> <p>○위치 : 노원구 월계동 1번지 9호 일대</p>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 20,300㎡(국·공유지 8,772㎡, 사유지 11,528㎡)</li> <li>• 도시계획사항 : 자연녹지지역, 하천(일부)</li> </ul> <p>4. 검토의견</p> <p>(요지)</p> <p>○노원구 월계동 1번지 7호 일대의 동부고속도로건설로 발생될 폐천부지 20,300㎡에 대하여 현재 건설중인 동부고속도로가 완성되는 '93. 12이후, 이 폐천부지를 양여받을 것을 전제로 이 지역에 사전 균린공원을 지정코자 하는 내용임.</p> <p>(현황)</p> <p>○이 공원 결정 예정지는 월계 시영아파트지역 전면 25m도로와 동부고속도로의 중간에 있어, 그 중 11,528㎡는 14인이 소유한 사유지이며, 나머지 8,772㎡는 국·공유지이나 국·공유지상에는 3동의 무</p>	의 안	840
의 안	830				
의 안	840				

<p>허가건물이 4세대가 거주 중에 있음.          (검토결과)</p> <p>○ 도시계획과 입안부서인 노원구에서 인근 주민의 요망에 따라 '94년부터 '96년까지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사업을 시행할 것을 전제로 우선 공원용지를 결정코자 한 것으로 공원결정에는 동의의견이나, ○ 노원구의 경우 이미 균린공원을 지정후 미시설된 곳이 6개소에 1,289천㎡나 되어 신규지정 시설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경우 재정형평이 맞지 않는 점이 있으며, 또 시설결정 예정지에는 무허가 건물 등이 있어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므로 현지확인 후 처리의견임.</p> <p>5.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구종 관광공 사분구 사업 완료, 4개분구 기존 건물 존치, 삼익분구 사 업미시행) <p>【세종로 도심지 재개발구역 지정】</p> <p>○ 위치 : 종로구 당주동, 세종로동, 신문로1가동 일대</p>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 15,656m<sup>2</sup> (4,736평) → 국·공유지 2,796m<sup>2</sup>, 사유지 12,860m<sup>2</sup></li> <li>• 건축물 : 75동</li> <li>• 가구수 : 29가구(가옥주 4가구, 세입자 25가구)</li> <li>• 도시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1종미관지구, 주차장정비지구, 특정가구정비지구</li> </ul> <p>4. 검토의견</p> <p>○ 본 안건은 금문도 특정가구정비지구는 해제하고 세종로 특정가구정비지구는 이를 해제하면서 이 지역을 포함한 종로구 당주동, 세종로동, 신문로1가동 일대에 새로이 도심지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임.</p> <p>○ 금문도 특정가구는 '73. 9. 6 지정되어 가구내 6개분구중 관광공사분구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4개분구는 기존건물 존치분구이고 삼익분구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사업이 미시행되어 이 지역은 더 이상 특정가구로 존치할 이유가 없어 지구의 해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p> <p>○ '74. 9.13 지정된 세종로 특정가구정비지구는 6개분구중 현대분구만 사업이 완료되고 5개분구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되나, 특가구의 지정목적은 소규모건물이 무질서하게 난립한 도심지역을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로 유도하여 도시미관을 유지하는데 있으므로 사업이 미시행 중인 이 지역 5개분구는 사업시행상 부지형태도 적당치 않고 대지가 소필지로 소유주가 86명이</p>
의 안 번 호 849	

<p>나 되어 조합구성이 필요한 실정으로 특 정가구정비사업은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어 특가구를 해제하고 인근 지역과 연대하여 도심지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도 시 미관유지를 위하여 타당한 결정안으로 사료됨.</p> <p><b>【참고】</b></p> <p>'91.12.14 도시계획법개정에 따라 구도시계 획법에서 인정하는 특정가구정비지구는 삭제 되어 신규로 지구지정은 불능함.</p> <p><b>5. 심사결과</b>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table border="1" data-bbox="282 842 489 909"> <tr> <td style="padding: 5px;">의 안 번 호</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853</td> </tr> </table> <p>1. 건 명 : 도시계획(도로, 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p> <p>2. 제안이유 : 도시계획(도로, 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p> <p>○ 내용</p> <p><b>【도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점 : 신내동 595-6기점, 신내동 674-1종점(B=30m, L=1,214m)</li> <li>- 기점 : 신내동 594기점, 망우동 489-2 종점(B=15m, L=806m)</li> <li>- 변경 : 망우동 489-2기점, 신내동 674-1종점(B=25~32m, L=2,020m)</li> </ul> <p>※ 신내동 594~망우동 489-2간 L=806m 폭원확장(B=15→25~32m)</p> <p><b>【미관지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정 : 신내동 594기점, 망우동 489종점(A=19,032m<sup>2</sup>, L=793m) 도로양측 12m</li> <li>•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li> <li>•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 24건</li> <li>- 의견내용</li> </ul> <p style="text-align: right;">[ 재산권행사제한 및 기존 4차선도로 만으로 충분하므로 도로확장반대 ]</p>	의 안 번 호	853	<p>└ 현시가로 충분한 보상요구</p> <p>4. 검토의견</p> <p>○ 중랑구 망우동 489-2에서 신내동 674-1간 2,020m의 기존 15m 폭도로를 도로 폭원 25m 내지 32m로 확장하면서 이 도로의 양측을 따라 신내동 594에서 망 우동 489간 793m에 양측으로 각 12m 폭의 면적 19,032m<sup>2</sup>에 달하는 5종미관지구를 지정코자 하는 내용임.</p> <p>○ 이 도시계획결정은 중랑구 신내동 일대에 313천평에 달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 이주에 따르는 교통량증가에 대비하여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써 사업 구역내에 전철구간이 있어 일부 지하도를 계획하면서 차량 회전로 확보를 위하여 일부지역은 도로폭원을 증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p> <p>○ 확장도로는 25미터의 중로이며 신내택지로 통하는 간간도로로서 이 지역 도시미관 유지를 위하여 5종미관지구를 신규로 지정코자 하는 것임.</p> <p>○ 본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도로확장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이 있었으나 신내택지의 규모와 지역여건으로 보아 도로의 확장 및 미관지구 지정은 도시계획운영상 타당한 결정(안)으로 사료됨.</p> <p>※ 5종미관지구의 지정 요건(도시계획법 제18조) 1,2,3,4미관지역을 제외한 기타 도시의 미관유지가 필요한 지역으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250m<sup>2</sup></li> <li>- 2층 이상의 건물유지</li> <li>- 건축물 규모 12×6m 이상</li> <li>- 대지 내 공지 3m 이상</li> </ul> <p>5. 심사결과</p> <p>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table border="1" data-bbox="811 1709 1002 1776"> <tr> <td style="padding: 5px;">의 안 번 호</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870</td> </tr> </table> <p>1. 건 명 : 도시계획(지역) 변경결정</p>	의 안 번 호	870
의 안 번 호	853				
의 안 번 호	870				

<p>2. 제안이유 : 도시계획(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p> <p>○위치 : 관악구 신림동 101번지 일대</p>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 124,757m<sup>2</sup></li> <li>• 변경사항 : 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li> <li>• 도시계획사항 : 도시계획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원</li> <li>•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 없음.</li> </ul> <p>※ 대상지역은 노후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으로 공원 및 녹지기능을 완전 상실하였으며, 기능 회복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불량주택 개량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함.</p> <p>4. 검토의견</p> <p>○본 의견청취의 건은 관악구 신림동 101번지 일대 124,757m<sup>2</sup>의 자연 녹지지역을 불량주택 개량재개발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임.</p> <p>○이 지역은 국·공유지로서 공원용지이며 일부는(21.7%) 일반주거지역이고 대부분(78.3%)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상에는 2,408동의 건물이 있으나 대부분 저소득 주민 거주지역으로서 주택이 협소하고 열악한 실정으로 재개발이 요구된 지역임.</p> <p>○'73.12부터 주택개량재개발을 위하여 구역을 지정하였다가 주민 반대로 장기간 사업을 미시행중 구역이 해제되었던 곳으로 85년 다시 재개발구역을 지정코자 하였으나 재개발구역은 “주거지역에 지정 원칙”에 맞지 않아 사업이 보류된 바 있음.</p> <p>○'93. 8. 6 건설부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업무지침”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변경이 요구되는 지역은 시장권한으로 지역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이 지역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자연녹</p>	<p>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은 시 변경 결정안에 동의 의견임.</p> <p>5. 심사결과</p> <p>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table border="1" data-bbox="806 541 1002 619">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의 안</td> <td style="text-align: center;">87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변 호</td> <td></td> </tr> </table> <p>1. 건 명 : 이문4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p> <p>2. 제안이유 : 이문4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p> <p>○위치 : 동대문구 이문동 83번지 일대</p>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 12,186m<sup>2</sup>(국공유지 393, 사유지 11,793)</li> <li>• 건축물 : 124동(유허가)</li> <li>• 가구수 : 293세대(가족주 124, 세입자 169세대)</li> <li>•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li> <li>•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 구역지정 신청 시 76.6%, 주민공람 시 67.7%</li> </ul> <p>4. 검토의견</p> <p>○동대문구 이문동 83번지 일대 12,186m<sup>2</sup> 신규로 이문4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을 지정하여 주택개량을 위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내용임.</p> <p>○이 지역내에는 124동의 유허가 건물이었으나 대부분의 건물이 2·30평의 소형 택지위에 지어지고 건물도 건축된 지 2·30년이 된 노후건물촌으로서 지역재개발이 요구된 지역임.</p> <p>○주택개량사업은 주민사업으로써 주택개량 대상이 될 시, 주민동의에 의하여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이곳 이문4구역은 주민동의율이 겨우 법정동의율에 미칠만큼 저조하고 주변지역이 구역지정 지역과 유사한 지역인데,</p>	의 안	872	변 호	
의 안	872				
변 호					

<p>구역을 소형으로 한정하고 지형도 요철화되어 사업시행에 다소 불리한 점이 예견되나 구역지정에는 동의 의견임.</p>	<p>1. 건명 : 옥수7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 지정</p>		
<p>5.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p>2. 제안이유 : 옥수7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table border="1" data-bbox="271 572 484 662"> <tr> <td>의안 번호</td> <td>873</td> </tr> </table>	의안 번호	873	<p>3. 주요요지 ○ 위치 : 성동구 옥수동 4번지 일대 ○ 내용 • 면적 : <math>46,619\text{m}^2 \rightarrow 28,796\text{m}^2</math> (감 <math>17,823\text{m}^2</math>)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 지구, 일부공원 •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 66.4%</p>
의안 번호	873		
<p>4. 검토의견 ○ 위치 : 성동구 금호동 328번지 일대 ○ 내용 • 면적 : <math>261,608.4\text{m}^2 \rightarrow 266,467.4\text{m}^2</math> (증 <math>4,859\text{m}^2</math>)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 지구, 일부공원 •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 100%</p>	<p>4. 검토의견 ○ 성동구 옥수동 4번지 일대 기존 옥수7 주택개량재개발구역 <math>46,619\text{m}^2</math>에서 <math>17,823\text{m}^2</math> 를 구역에서 해제코자 하는 구역변경지정 내용임. ○ 변경 원인은 본 재개발사업 구역을 당초 4개지구로 분리하여, 그 중 옥수7-1지역 은 이미 준공되었으며, 7-2지역은 '88.12 지구 해제되고 잔여지로 있던 7-3지역 과 7-4지역은 지역이 협소하고 요철화 되어 사업성이 없는 것 등을 이유로 주 민이 사업시행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를 방지할 수 없어 주민요구대로 구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구역 변경에 동의 의견임.</p>		
<p>4. 검토의견 ○ 금호1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내용 은 성동구 금호동 328번지 일대 기존 금호1 재개발구역 <math>261,608.4\text{m}^2</math>에 <math>4,859\text{m}^2</math> 의 구역을 추가 지정코자 하는 사업내용 임. ○ 이 지역은 기존구역이 미지정 구역과 지 형상 요철이 심해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추가로 지정코자 하는 구역이 재개발구역 지정요 건에 적합하고 주민전체가 구역변경에 동 의하고 있어 시 재개발구역 변경안에 동 의 의견임.</p>	<p>5.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p>5.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table border="1" data-bbox="794 1493 1008 1560"> <tr> <td>의안 번호</td> <td>905</td> </tr> </table>	의안 번호	905
의안 번호	905		
<table border="1" data-bbox="271 1740 484 1852"> <tr> <td>의안 번호</td> <td>874</td> </tr> </table>	의안 번호	874	<p>1. 건명 :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 결정</p> <p>2. 제안이유 :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 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 ○ 위치 : 경복궁 주변</p>
의안 번호	874		

## ○내용

구 분	위 치	고도제한 및 면적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경복궁주변	계	1,189,800m <sup>2</sup>	1,189,800m <sup>2</sup>	
고도지구 (최고 고도)	종로구 청운·효자·창성· 궁정·통의·삼청·적선·팔 관·가회·화·소격·재·안 국·사간·송현동 일대	현 지반고로부터 10m 이하 (732,772m <sup>2</sup> )	현 지반고로부터 15m 이하 (732,772m <sup>2</sup> )	고도제한 변경내용 (10m 이하→ 15m 이하)
변경결정	종로구 청운·신교·궁정· 옥인·통인·누상·누하·체 부·필운동 일대	현 지반고로부터 15m 이하 (415,800m <sup>2</sup> )	현 지반고로부터 18m 이하 (415,800m <sup>2</sup> )	고도제한 내용변경 (15m 이하→ 18m 이하)
	종로구 재동 83 일대	현 지반고로부터 20m 이하 (13,800m <sup>2</sup> )	현 지반고로부터 20m 이하 (13,800m <sup>2</sup> )	변경 없음
	종로구 소격동 165 일대	현 지반고로부터 25m 이하 (27,428m <sup>2</sup> )	현 지반고로부터 25m 이하 (27,428m <sup>2</sup> )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고도지구, 미관(2,3,4종) 지구

## 4. 검토의견

○경복궁주변 일대 현행 도시계획상 4개 고도지구중 청운·효자동 등 지역은 현행 고도제한 10m 이하에서 15m 이하로 하고 신교·궁정동 등 지역은 현행 15m 이하에서 18m 이하로 고도제한을 각각 완화코자 하는 변경 내용임.

○이 지역 일대 고도지구는 1977. 5. 9. 지구결정후 1977.10.31. 지역을 추가지정하여 현재의 4개지역 고도지구 면적은 1,189.9 km<sup>2</sup>로서 고도지구의 제한을 받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아 왔던 지역임.

○고도지구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변경은 동의의견이나 현재의 4개 고도지구 중 완

화지역은 2개 지역이고 완화지역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완화폭을 더 넓혀 주도록 요구하고 있어 현지 확인후 처리 의견임.

## 5.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의 안	911
번 호	

- 건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광장) 변경 결정
-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공원, 광장) 변경 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주요요지

○위치 : 동대문구 장안동 204, 성동구 군자

<p>동 328</p>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면적 5,641m<sup>2</sup>(장안동 2,840m<sup>2</sup>, 군자동 2,801m<sup>2</sup>)→0(감 5,641m<sup>2</sup>): 공원 폐지 후 광장으로 변경</li> <li>• 광장면적 42,600m<sup>2</sup>(장안동 204 일대)→60,000m<sup>2</sup>(증 17,400m<sup>2</sup>: 장안동 9,020m<sup>2</sup>, 군자동 8,380m<sup>2</sup>)</li> <li>• 도시계획사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원, 주차장정비지구</li> <li>•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없음.</li> </ul> <p>4. 검토의견</p> <p>○ 본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은 동부간선 도로와 천호대로 교차점에 위치한 동대문구 장안동 204번지 2,840m<sup>2</sup>와 성동구 군자동 328번지 2,801m<sup>2</sup> 등 5,641m<sup>2</sup>에 현재의 도시계획상 공원시설을 교통광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임.</p> <p>○ 이 공원은 장안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고 '76. 6.25 환지확정처분서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나, 이 지역은 간선도로의 교차점에 설치된 녹지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교차점 광장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나 당시 공원으로 잘못 지정된 것을 시정하려는 것으로 변경 결정안에 동의 의견임.</p> <p>5. 심사결과</p> <p>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p>유지 26,551.3m<sup>2</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202동(유허가 196, 무허가 6)</li> <li>• 가구수: 516세대(가옥주 226, 세입자 290)</li> <li>• 도시계획사항: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li> <li>• 주민동의: 81.2%</li> </ul> <p>4. 검토의견</p> <p>○ 도봉구 수유동 260 일대는 건축한 지 20~30년 된 노후 불량주택지역을 재개발하려는 것으로, 이 지역은 도로도 협소하고 하수도 등 주민편의 시설이 불량한 지역으로 재개발이 요구된 지역임.</p> <p>○ 지역내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나, 아직 개설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 대체도로도 확보될 수 있을 것임.</p> <p>○ 주민동의율 81.2%로서 대지 및 건물주가 대부분 주택개량에 동의하고 있어 재개발 구역 지정에 동의의견임.</p> <p>5. 심사결과</p> <p>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right: 10px;"> <tr> <td>의 안</td> <td>913</td> </tr> <tr> <td>변 호</td> <td></td> </tr> </table>	의 안	913	변 호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right: 10px;"> <tr> <td>의 안</td> <td>913</td> </tr> <tr> <td>변 호</td> <td></td> </tr> </table>	의 안	913	변 호	
의 안	913								
변 호									
의 안	913								
변 호									

의 안	912
변 호	

1. 건 명: 수유2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2. 제안이유: 수유2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 위치: 서대문구 홍제동 43번지 일대
  - 내용
    - 면 적: 21,702m<sup>2</sup>(국공유지 11,268m<sup>2</sup>, 사유지 10,434m<sup>2</sup>)
    - 건축물: 125동(유허가 69, 무허가 56)
    - 가구수: 304세대(가옥주 140, 세입자 164)
    - 도시계획사항: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 주민동의: 90.1%

## 4. 검토의견

○ 서대문구 홍제동 43번지 일대 21,702㎡에 재개발사업지구를 신규로 지정코자 하는 사업내용으로서 이 지역은 무약재 위의 경사진 지역에 산재해 있는 기존 불량주택을 재개발하려는 것임.

○ 사업 예정지역 내에는 10,519㎡의 공원용지가 포함되고 있어 공원용지가 축소되어지는 문제가 있으나, 사업 시행과정에서 공원면적의 51.06%인 5,371㎡만 공원을 해제하여 사어불 시행하려는 지역적 특성이 있음.

○ 홍제동 지역은 건물이 열악하고 공공시설도 태부족한 지역으로 주민동의율 90.1%로써 거주주민 대부분이 재개발을 희망하고 있어 재개발지구 지정에는 동의 의견임.

## 5.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의 안 번 호	914
------------	-----

1. 건 명 : 냉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2. 제안이유 : 냉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요지

○ 위치 : 서대문구 냉천동 72번지 일대

## ○ 내용

- 면적 : 13,007㎡(국공유지 850.8㎡, 시유지 12,156.2㎡)
- 건축물 : 130동(유허가 129, 무허가 1)
- 가구수 : 243세대(가옥주 107, 세입자 136)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 주민동의 : 92.3%

## 4. 검토의견

○ 서대문구 냉천동 72번지 일대에 신규로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서, 이 지역은 대부분 30년이 넘는 한옥 건물촌으로서 건물과 대지의 규모가 적고 건물도 노후되어 재개발이 요구된 지역임.

○ 92.3%인 주민동의가 있어 법적으로 지정 요건이 구비되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도시정비가 요구된 지역으로서 재개발지구 지정에 동의 의견임.

## 5.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의 안 번 호	915
------------	-----

1. 건 명 : 청량리5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2. 제안이유 : 청량리5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요지

○ 위치 : 동대문구 청량리동 214번지 일대  
○ 내용

- 면적 : 16,959㎡(국공유지 8,236㎡, 시유지 8,723㎡)
- 건축물 : 182동(유허가 83, 무허가 99)
- 가구수 : 353세대(가옥주 188, 세입자 165)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 주민동의 : 73.1%

## 4. 검토의견

○ 동대문구 청량리동 214 일대 16,959㎡에 신규로 재개발지구를 지정코자 하는 사업 내용으로서 이 지역 내에는 182동의 건물이 있으나, 건물이 노후불량하고 도시계획시설이 부족하며, 도로계획선이 있으나 계획선 시행사업은 되지 않은 곳으로,

○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 도로사업시행에 따른 보상금과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을 수 있음.

<p>인접지역은 민영주택 건설사업으로 지역이 이미 정비되어 이 지역도 재개발로서 도시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구역 지정에 동의 의견임.</p> <p><b>5. 심사결과</b></p> <p>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r> <td style="padding: 2px;">의 안 번 호</td><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center;">918</td></tr> </table>		의 안 번 호	918	<p>2. 제안이유 : 금호, 옥수 풍치지구 변경(일부 해제)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b>3. 주요요지</b></p> <p>○ 위치 : 성동구 금호동, 옥수동 일대</p>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 55,430m<sup>2</sup>(국·공유지 19,038m<sup>2</sup>, 사유지 36,392m<sup>2</sup>)</li> <li>• 건축물 : 505동(유허가 319, 무허가 186)</li> <li>• 가구수 : 1,238세대(가옥주 526, 세입자 712)</li> <li>•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풍치지구(일부), 옹봉 제1근린공원(일부), 미관지구(일부)</li> <li>• 주민동의 : 91.5%</li> </ul> <p><b>4. 검토의견</b></p> <p>○ 성동구 금호동 및 옥수동 일대 금호제8 주택개량재개발구역과 연계되어 있는 풍치지구 660,315m<sup>2</sup>중 재개발구역 내 48,470m<sup>2</sup>를 해제로자 하는 내용임.</p> <p>○ 금호제8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은 '92. 7. 6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92. 7. 9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에 구역 지정요구된 지역이나,</p> <p>○ 건설부에서 도시계획 측면을 감안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토록 요구하고 있어,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풍치지구 해제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를 사전 해제로자 한 것임.</p> <p>○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풍치지구를 해제할 시, 재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재개발구역지정이 지연이 될 경우, 풍치지구만 해제해 버리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구역지정을 전제로 한 풍치지구 해제가 되어야 할 것임.</p> <p><b>5. 심사결과</b></p> <p>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r> <td style="padding: 2px;">의 안 번 호</td><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center;">923</td></tr> </table>	의 안 번 호	923
의 안 번 호	918					
의 안 번 호	923					
<p>1. 건 명 : 금호, 옥수 풍치지구 변경(일부 해제)</p>						

<p>1. 건명 : 길음1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2. 제안이유 : 길음1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 위치 : 성북구 길음1동 547번지 일대 ○ 내용 • 면적 : 46,525m<sup>2</sup>(사유지 46,525m<sup>2</sup>) • 건축물 : 411동(유허가 383, 무허가 28) • 가구수 : 820세대(가옥주 420, 세입자 400)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 주민동의 : 84.9%</p> <p>4. 검토의견 ○ 성북구 길음동 547번지 일대 46,525m<sup>2</sup>에 재개발사업지구를 신규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 지역 내에는 411동의 건물이 있으나, 건축된 지 20~30년이 경과한 노후 불량건물들이며, 건축대지의 규모가 적어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임. ○ 공공시설에 태부족하고 특히, 도로망이 협소하여 지역개발이 시급한 지역으로 재개발지구지정에는 동의 의견이나, 이 지역이 재개발되면 주택이 약 1,2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간선도로와 거리가 멀어 진입로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어 사업시행시에 적정한 계획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p> <p>5.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table border="1" data-bbox="271 1567 477 1635"> <tr> <td style="padding: 2px;">의안</td> <td style="padding: 2px;">944</td> </tr> <tr> <td style="padding: 2px;">번호</td> <td style="padding: 2px;"></td> </tr> </table> <p>1. 건명 : 상도3 주택개량재개발구역 결정 2. 제안이유 : 상도3 주택개량재개발구역 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p>	의안	944	번호		<p>○ 위치 : 동작구 상도동 348 일대 ○ 내용 • 면적 : 16,208m<sup>2</sup>(국·공유지 1,839m<sup>2</sup>, 사유지 14,369m<sup>2</sup>) • 건축물 : 140동(유허가 121, 무허가 19) • 세대수 : 249세대(가옥주 138, 세입자 111)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 주민동의 : 93%</p> <p>4. 검토의견 ○ 동작구 상도동 348 일대 16,208m<sup>2</sup>에 상도3 주택개량재개발 구역을 신규로 지정코자 하는 결정안임. ○ 지역 내에는 140동의 주택이 있으나, 건축연수가 20~30년 된 노후불량전물촌으로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어렵고 하수도 등 공공시설이 부족하여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서 재개발이 요구된 지역임. ○ 주민동의율 2/3 이상(93%)이며, 인근 지역에 비해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지역 재개발을 위한 구역지정에 동의 의견임.</p> <p>5.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table border="1" data-bbox="806 1320 997 1388"> <tr> <td style="padding: 2px;">의안</td> <td style="padding: 2px;">945</td> </tr> <tr> <td style="padding: 2px;">번호</td> <td style="padding: 2px;"></td> </tr> </table> <p>1. 건명 : 상도6 주택개량재개발구역 결정 2. 제안이유 : 상도6 주택개량재개발구역 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 위치 : 동작구 상도동 산 49-78, 흑석동 239-100일대 ○ 내용 • 면적 : 40,403m<sup>2</sup>(국·공유지 28,084m<sup>2</sup>, 사유지 12,319m<sup>2</sup>) • 건축물 : 122동(유허가 49, 무허가 73) • 세대수 : 322세대(가옥주 148, 세입자</p>	의안	945	번호	
의안	944								
번호									
의안	945								
번호									

<p style="text-align: center;">17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공원(현충묘 지공원)</li> <li>• 주민동의 : 93%</li> </ul> <p>4. 검토의견</p> <p>○ 동작구 상도동 산 49-78 외 흑석동 239-100 일대 40,403㎡에 상도6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을 결정코자 하는 내용임.</p> <p>○ 이 지역은 현충 묘지공원과 인접된 불량 건물촌으로 무허가 건물이 많고, 현재의 건물분포로 보아 3분의 2정도의 건물이 공원지역내(국·공유지)에 편재되어 있어, 공원 기능확보와 주택정비를 위해서 주택 재개발이 요구된 지역임.</p> <p>○ 주민동의율이 93%이며, 지형상으로 등고 가 높고 공공시설도 부족한 설정으로 재 개발구역 결정에는 동의 의견이나, 사업 시행상 공원용지 일부(6,845㎡)를 해제하는 문 제가 있어 공원용지 유지상 충분한 검토 가 요구됨.</p> <p>5. 심사결과</p> <p>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의 안 번 호</td> <td style="padding: 2px;">946</td> </tr> </table> <p>1. 건 명 : 제기2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p> <p>2. 제안이유 : 제기2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p> <p>○ 위치 : 동대문구 제기동 122-200 일대</p>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 41,940㎡ (국·공유지 2,363㎡, 사유지 39,577㎡)</li> <li>• 건축물 : 262동(유허가 235, 무허가 27)</li> <li>• 세대수 : 597세대(가옥주 257, 세입자 340)</li> <li>•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구 • 주민동의 : 71%</li> </ul> <p>4. 검토의견</p> <p>○ 동대문구 제기동 122-200 일대 41,940 ㎡에서 제기2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을 지정 하고자 하는 결정안임.</p> <p>○ 이 지역은 제기동 정릉천 인접 한옥촌으 로서 건물 대부분이 건축한 지 20~30 년 되는 노후 불량건물로써 지역내에는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불능하고 하 수도 등 공공시설도 미비하여 재개발이 요구된 지역임.</p> <p>○ 지역내에는 국·공유지가 일부(도로 2,363 ㎡) 있고 대부분 사유지로서 주민 등의 가 법정동의율 67%를 상회하여 구역 지정에는 동의의견이나 주민동의율이 저조 (71%)하고 '93년도에는 구역을 지정하여 주도록 의회에 요구한 후, 주민간의 의견 불일치로 지정요구를 철회한 사실 등 이 있어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p> <p>5. 심사결과</p> <p>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의 안 번 호</td> <td style="padding: 2px;">948</td> </tr> </table> <p>1. 건 명 : 종로구 구기, 평창동 일대 용 도지역, 지구 변경결정</p> <p>2. 제안이유 : 종로구 구기, 평창동 일대 용 도지역, 지구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p> <p>○ 위치 : 종로구 구기, 평창, 부암동 일대</p>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종로 구기, 평창동 일대</li> <li>— 면적 : 292,165,598㎡ → 292,167,929㎡ (증 2,331㎡)</li> <li>—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li> <li>— 위치 : 종로 구기, 평창동 일대</li> <li>— 면적 : 5,343,111㎡ → 5,340,780㎡ (감 2,331㎡)</li> <li>— 도시계획사항 : 전용주거지역</li> </ul> </li> </ul>	의 안 번 호	946	의 안 번 호	948
의 안 번 호	946			
의 안 번 호	9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 종로 부암, 구기, 평창동 면적 : 2,010,916㎡ → 2,008,332㎡ (감 2,584㎡)</li> <li>도시계획사항 : 풍치지구 위치 : 종로 구기, 평창동 면적 : 66,348㎡ → 66,030㎡(감 318㎡)</li> <li>도시계획사항 : 고도지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주요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양천구 목동아파트 7단지 일대 외 7개소</li> <li>○ 규모 : 지하철 5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거장변경 : 2개소(목동, 오목교정 거장)</li> <li>환기구신설 : 4개소</li> <li>환기구변경 : 2개소</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용도지역 및 지구변경 결정 건은 93년 제60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를 받아 '93. 4.21 서울시 고시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바 이중 일부가 입안 과정에서 확으로 중복 결정되어 중복으로 결정된 용도 지역과 지구를 각각 해제하여 변경 결정 코자 하는 안임.</li> <li>○ 변경코자 하는 내용은 구기, 평창동지역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 주거지역증 2,331㎡를 감소하여 일반 주거지역에 증가하고</li> <li>- 용도지구증 부암, 구기, 평창동 일대 풍치지구증 2,584㎡를 감소하고 또 구기, 평창동 일대 고도지구 중 318㎡를 각각 감소하고자 하는 것임.</li> </ul> </li> <li>○ 종로구 구기, 평창동 일대 용도지역과 지구변경은 북한산 자연경관보존축면에서 60회 임시회에서 현황을 답사하고 검토되었던 내용으로 중복으로 결정된 용도지역과 지구는 시정되도록 변경 결정안과 같이 동의 의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건은 '90.10.13 결정된 지하철 5호선(공항~고덕 : 52km구간)과 연대하여 기결정된 정거장 2개소와 환기구 2개소에 대한 규모증가 및 축소를 위한 시설변경결정과 본선 환기구 4개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임.</li> <li>○ 환기구 4개소를 신설코자 하는 계획은 당초 본선 계획시 환기구까지 결정되었어야 하나, 공사구간의 지형과 시설현황에 맞추어 사후에 환기구를 신설하도록 결정 코자 하는 것임.</li> <li>○ 본 결정안에 대한 역사와 환기구 등 결정에 대해서는 지하철 기술부서에서 기능적 문제를 이미 확인하고 변경 입안과정에서도 주민의 반대 의견이 없었던 사항으로 시설변경 결정안에 동의 의견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심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심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의 안</td> <td style="padding: 2px;">951</td> </tr> <tr> <td style="padding: 2px;">번 호</td> <td style="padding: 2px;"></td> </tr> </table> <p>1. 건 명 : 도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도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의 안	951	번 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의 안</td> <td style="padding: 2px;">952</td> </tr> <tr> <td style="padding: 2px;">번 호</td> <td style="padding: 2px;"></td> </tr> </table>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구로역~온수동시계</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 적 : 364,513㎡ → 366,543㎡(증 2,030㎡) ※구일역사 신축에 따른 면적변경</li> </ul> </li> </ul> </p>	의 안	952	번 호	
의 안	951								
번 호									
의 안	952								
번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계획사항 : 자연녹지지역, 하천(안양천)</li> <li>공람공고시 주민의견 : 없음</li> </ul> <p>4. 검토의견</p> <p>○ 본건은 경인철도 복선증 구로역에서 개봉역 중간 안양천변에 구일전철역사 신축계획에 따라 역사부지에 편입될 당초 자연녹지지역 하천부지 2,030m<sup>2</sup>를 철도시설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임.</p> <p>○ 이 역사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변경 입안과정에서 주민의 반대 의견이 없었으며, 또 본 변경결정안은 역사 신축에 따른 필요한 도시계획 절차로서 시설 결정에 동의 의견임.</p> <p><b>【참고】</b></p> <p>본 부지에는 역사와 역광장 그리고 육교 등 부대시설이 설치될 계획이며 역사부지인 하천부지는 관리청으로부터 역사 및 전철 교량설치용으로 점용 허가를 받은 지역임.</p> <p>5. 심사결과</p> <p>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width: 100%;"> <tr> <td style="padding: 2px;">의 안 번 호</td> <td style="padding: 2px;">953</td> </tr> </table>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철도·유통업무설비) 결정 및 변경결정</p> <p>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철도·유통업무설비) 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p> <p>○ 위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호선 : 강동구 암사동~송파구 장지동</li> <li>— 3호선 연장구간 : 송파구 장지동</li> </ul>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철 8호선(서울시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선 신설 : 4.52km(2단계 구간)</li> <li>— 정거장 신설 : 4개소(암사, 천호, 강동구청, 봉촌토성역)</li> <li>— 정거장변경 : 7개소(잠실, 석촌, 송파,</li> </ul> </li> </ul>	의 안 번 호	9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락시장, 문정, 장지, 복정역)</li> <li>— 환기구 신설 : 24개소</li> <li>— 유통업무설비 변경 : 538,500m<sup>2</sup>→538,076m<sup>2</sup>(감 424m<sup>2</sup>)</li> <li>• 지하철3호선 연장구간</li> <li>— 환기구 신설 : 1개소</li> </ul> <p>4. 검토의견</p> <p>○ 본 결정안은 지하철 8호선(모란~암사간) 종 서울시구간</p> <p>— 1단계(잠실~장지 : '91. 7.15 결정) 공사 구간중 7개의 정거장의 규모를 변경하고 본선에 24개소에 환기구를 신설하면서</p> <p>— 2단계(암사~잠실 : 4.52km) 지하철구간의 본선 결정과 정거장 4개소를 신규로 결정코자 하는 것 외에</p> <p>— 1단계 건설구간의 가락시장정거장이 유통업무시설인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일부(424m<sup>2</sup>)가 충복되어 유통업무시설이 저촉되는 부분을 해제코자 하며</p> <p>— 3호선 연장구간(양재~수서 : 8km) 노선 1개소를 신설코자 하는 등의 내용으로서</p> <p>○ 전체적으로는 본선 시설결정 1건과 정거장에 대한 규모변경 7개소, 신설 4개소 및 환기구 25개소 신설, 그리고 유통업무 시설변경 1개소 등을 각각 신규 또는 변경결정코자 하는 안임.</p> <p>○ 시설결정은 시장안에 동의의견이나 지하철 시설은 교통기능의 중요성과 관련주민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시설이므로 기술적인 요건을 충분히 검토 후 처리함이 가능 것으로 사료됨.</p> <p>5. 심사결과</p> <p>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width: 100%;"> <tr> <td style="padding: 2px;">의 안 번 호</td> <td style="padding: 2px;">954</td> </tr> </table>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p>	의 안 번 호	954
의 안 번 호	953				
의 안 번 호	954				

<p>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p>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선 : 기점 은평구 신사동 24, 종점 중랑구 신내동 355 - 규모 : B=8~24m, L=36.4km</li> <li>• 연결선 : 기점 중랑구 묵동 189, 종점 노원구 공릉동 678 - 규모 : B=8m, L=308m(6호선~7호선 연결선)</li> <li>• 정거장 : 은평구 응암정거장 외 37개소 - 규모 : 168,925m<sup>2</sup></li> </ul> <p>○ 지역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사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개발제한구역</li> <li>•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 북가좌정거장→외산 정거장으로 명칭 변경요구</li> </ul> <p>※반영여부 : 별첨검토(서울시지명심사위원회 상정예정)</p> <p>4. 검토의견</p> <p>○ 본 시설경정은 2기 지하철 건설구간중 6호선(은평구 신사동~중랑구 신내동 : 36.4 km) 본선과 정거장 38개소를 신규로 지정하고, 이번에 결정하려는 6호선 본선과 현재 시공중인 7호선(도봉~온수)의 본선과의 연결을 위한 연결선 308m(중랑구 묵동~노원구 공릉동)를 신규로 각각 지정코자 하는 내용임.</p> <p>○ 본 결정안은 '93. 4.13 도시철도법 제4조의 4①항에 의거 교통부로부터 노선의 지정을 받고 '93. 5.26 동법 제4조①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사업면허를 받았으며, 이번 같은 법 제4조의 4②항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절차로서</p> <p>○ 지하철 건설의 중요성과 긴급성으로 보아 시장 결정안에 동의 의견이나 지하철 6호선 결정과 7호선과 연결선 결정의 타당성과 각 정거장 결정에 대한 기술적인</p>	<p>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p> <p>5. 심사결과</p> <p>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의 안 번 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955</td> </tr> </table>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p> <p>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p> <p>○ 위치 : 용산구 문배동 3-7~용문동 5-187</p>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모 : B=12.3m → B=16.9~29.2m ※용산~효창간 반복선 설치로 폭원화장)</li> <li>•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녹지, 도로, 철도</li> <li>•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 없음.</li> </ul> <p>4. 검토의견</p> <p>○ 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안은 용산구 문배동 3-7에서 용문동 5-187간 일반철도 용산선지역의 용산에서 효창간 반복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당초 철도시설 폭원 12.3m를 16.9~29.2m로 확장코자 하는 내용으로서</p> <p>○ 철도선 신설에 따른 철도시설 확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되어 변경안에 동의 의견임.</p> <p>※변경구역은 철도청 소유재산이며, 사업 시행자는 철도청장임.</p> <p>5. 심사결과</p> <p>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의 안 번 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957</td> </tr> </table>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p>	의 안 번 호	955	의 안 번 호	957
의 안 번 호	955				
의 안 번 호	957				

<p>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성산동 561-1 기점, 노원구 공릉동 284-2 연장</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모 : B=26~63m, L=19,340m</li> <li>※ 홍제동 278 외 3필지 환경시설대 재외(감 159m<sup>2</sup>)</li> <li>•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li> <li>•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 없음.</li> </ul> </li> <li>4.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변경결정안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2.7.20 결정된 북부간선도로 건설구간 내 홍제동 278 외 일대 도로 연변에 폭원 10m의 환경시설대(도로시설에 포함)를 도로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34조에 의거 시설결정한 바는데,</li> <li>- 이 시설내에 저촉된 주거건물 4동의 소유주로부터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확대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 건물에 저촉되는 환경시설대는 당초 시설결정에서 제외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임.</li> </ul> </li> <li>○ 건물 저촉부분에 대한 확대 보상과 과다 보상비 요구를 이유로 이 4개 지역을 환경시설대에서 제외할 시,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34조에 교통량이 많은 도로 연변의 주거지역, 정숙을 요구하는 시설 등 지역에는 바깥쪽에 환경시설대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환경시설대 변경은 현지확인 등 충분한 검토후 처리의견임.</li> <li>5. 심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li> </ul> </li> </ul> </li> </ul> <table border="1" data-bbox="287 1702 489 1783"> <tr> <td style="padding: 2px;">의 안</td><td style="padding: 2px;">958</td></tr> <tr> <td style="padding: 2px;">번 호</td><td></td></tr> </table>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 도로, 일</p>	의 안	958	번 호		<p>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 및 변경 결정</p> <p>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 도로, 일 단의 주택지조성 사업) 결정 및 변경 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 용도지역(생산녹지→일반주거지역) 변경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공항동 1227</li> <li>• 면적 : 102,000m<sup>2</sup>(공항주민 이주단지 조성 예정지)</li> </ul> </li> <li>○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공항동 1227</li> <li>• 면적 : 102,000m<sup>2</sup>(공항주민 이주단지 조성 예정지)</li> </ul> </li> <li>○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모 : B=40m, L=1,020→690m(남부순환도로 일부구간 위치변경)</li> </ul> </li> <li>○ 도시계획사항 : 생산녹지지역</li> <li>○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 없음.</li> <li>4.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은 강서구 공항동 1227번지 일대 공항주민 이주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당초 생산녹지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li> <li>- 이 지역을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지로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도로, 폭원 40m, 연장 1,020m를 690m로 축소 변경코자 하는 내용임.</li> <li>○ 이 사업은 현재 건물이 있는 지역이 '76. 6에, 공항시설로 결정후 '92.11에 추가로 공항시설로 확장됨에 따라 이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이주시키면서 이주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주거용에 맞도록 시설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을 교통부에서 하여야 하나,</li> <li>- '89.12. 교통부와 이주사업 시행 위탁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이 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li> </ul> </li> <li>○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에 동의</li> </ul>
의 안	958				
번 호					

<p>의견임.</p> <p>5.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width: 100%;"> <tr> <td style="padding: 2px;">의 안 번 호</td><td style="padding: 2px;">960</td></tr> </table> <p>1. 건명 : 동소문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 지정</p> <p>2. 제안이유 : 동소문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8번지 일대</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 283,390m<sup>2</sup> → 318,856(일부 추가, 증 35,466m<sup>2</sup>)</li> <li>• 건축물 : 252동(유허가 196동, 무허가 56동)</li> <li>• 가구수 : 550세대(가옥주 252, 세입자 298)</li> <li>•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 지구</li> <li>• 주민동의 : 79.8%</li> </ul> </li> <p>4.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8 일대 동소문 재개발구역에 인접된 일부지역(35,466m<sup>2</sup>)을 같은 동소문 재개발구역에 편입코자 하는 재개발구역 변경안임.</li> <li>○ 이번 추가로 지정하고자 한 지역은 당초 구역지정시 포함되었어야 하나 주민동의과정에서 제외되었던 곳을 금번에 추가코자 하는 지역으로서 지역내 주택이 불량주택촌이고 공공시설이 부족하여 재개발이 요구된 지역으로 구역 추가지정에 동의의견임.</li> <li>○ 본 추가지역이 재개발되면 동소문지역 일대는 불량주택이 거의 재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구역지정에 따른 주민동의율은 79.8%임.</li> </ul> </ul>	의 안 번 호	960	<p>5.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p>금회 기심사보류 (4건)</p>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width: 100%;"> <tr> <td style="padding: 2px;">의 안 번 호</td><td style="padding: 2px;">922</td></tr> </table> <p>1. 건명 : 도시계획(구역) 변경결정</p> <p>2. 제안이유 : 도시계획(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3. 9.17 서울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온 경기도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군 일부 행정구역이 시승격 등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독립된 도시계획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분리 요청이 있어 도시계획구역을 변경(분리) 코자 함.</li> </ul> </li> <li>○ 변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명시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군 각 일부지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명시 일부지역</li> </ul> </li> <li>○ 도시계획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준공업지역</li> <li>• 도시계획시설 : 공원, 도로, 학교, 철도, 하수시설, 자동차정류장 등</li> </ul> </li> <li>○ 주민공람결과 의견없음.</li> </ul> <p>4.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의 서울시 도시계획구역 면적 665,984km<sup>2</sup> 중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고양시, 구리시, 그리고 남양주군 일부지역 등 59,749km<sup>2</sup>를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코자 하는 내용임.</li> </ul>	의 안 번 호	922
의 안 번 호	960				
의 안 번 호	922				

<p>○ 경기도지역의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으로의 편입은 '63. 9.17 이루어진 것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발전 추세에 따라 자체 도시 계획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분리를 요구하여 음에 따라 구역을 변경 코자 한 것임.</p> <p>○ 도시계획구역 결정은 특정 도시발전을 위한 광역 지역관리 차원에서 행정구역과는 별개로 구역을 결정한 것인 바, 서울시 도시계획구역변경으로 인한 서울시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여 할 것으로 사료됨.</p>	<p>통혼잡이 우려되므로 건축주의 부담으로 기존전면도로를 차도는 5m에서 8m로, 보도는 3m에서 3.5m로 확장하고자 하는 도로 변경내용임.</p> <p>○ 앞으로 쇼핑센터가 영업을 개시할 시 이 용주민이 집중되어 교통혼잡이 우려되므로 도로 확장 결정에 동의 의견임.</p> <p>※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서 준공업지역에는 판매시설의 범위를 현행 시 건축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음.</p>								
<p>【참고】</p> <p>도시계획구역 변경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2의 각항에 정한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대상은 아님.</p>	<p>5. 심사결과</p>								
<p>보류</p>	<p>보류</p>								
<table border="1" data-bbox="303 1057 489 1125">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의 안</td> <td style="text-align: center;">956</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번 호</td> <td></td> </tr> </table>	의 안	956	번 호		<table border="1" data-bbox="838 848 1002 916">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의 안</td> <td style="text-align: center;">959</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번 호</td> <td></td> </tr> </table>	의 안	959	번 호	
의 안	956								
번 호									
의 안	959								
번 호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결정</p> <p>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결정</p> <p>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p>	<p>3. 주요요지</p>								
<p>○ 위치 : 창동(광17) 기점, 상계동(대2-26) 종점</p>	<p>○ 내용</p>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 모 : B=35m → B=35~38.5m ※ 창동 135-26~75-3간, 길이 95m 구간 폭원확장</li> <li>• 도시계획사항 : 준공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li> <li>•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 없음</li> </ul>	<p>○ 위치 : 구로구 가리봉동 535 일대 면적 : 6,483m<sup>2</sup> → 0</p> <p>○ 위치 : 광명시 철산동 322일대 면적 : 7,183m<sup>2</sup> → 0</p>								
<p>4. 검토의견</p>	<p>○ 지역현황</p>								
<p>○ 본건은 도봉구 창동 135-26 의 일대 쇼핑센터를 건축함에 따라 건물전면도로가 차도는 5m, 보도는 3m로 장차 쇼핑센터가 영업을 개시할 시, 이 지역에 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수출산업공단내에 소재하며, 다음 시설로 이용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리봉동 535일대 → 녹지대 조성(주차장 및 소공원)</li> <li>○ 광명시 철산동 322일대 → 자동차운전학원</li> </ul> </li> <li>•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연접하여 유수지시설이 설치되어 공단내 우·오수 배제</li> <li>• 토지소유자 : 한국수출산업공단</li> </ul>								
<p>○ 본건은 도봉구 창동 135-26 의 일대 쇼핑센터를 건축함에 따라 건물전면도로가 차도는 5m, 보도는 3m로 장차 쇼핑센터가 영업을 개시할 시, 이 지역에 교</p>	<p>4. 검토의견</p>								
<p>○ 본 구로구 가리봉동 535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은 '76. 9.24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사업 완료와 동시에 시설결정되었으나, 한국</p>	<p>○ 본 구로구 가리봉동 535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은 '76. 9.24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사업 완료와 동시에 시설결정되었으나, 한국</p>								

<p>수출산업공단에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시설지역에 주차장과 소공원을 만들고, 또 자동차화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p> <p>○'90. 4.26 제정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34조(공단용지의 용도별 구획 등)에 의거 공공시설구역(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공장시설구역으로 구획변경 고시됨에 따라</p> <p>○현재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임.</p> <p>○본 의견청취의 건은 법률에 의해서 공장 시설구역으로 구획 변경되어 수질오염 방지시설 유자는 불요하다 하더라도, 이 공단지역의 하수처리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후 처리 의견임.</p> <p>5. 심사결과 보류</p>	<p>4. 검토의견</p> <p>○서초구 원지동 23 일대에 쓰레기 중간 집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집하장시설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결정하고 여기에 따른 차량진입로를 결정하면서 이 진입도로에 저촉되는 유통업무설비 일부(<math>528m^2</math>)를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임.</p> <p>○본 시설결정은 서초구 내에서 수집된 쓰레기를 김포 해안매립지까지 운반함에 있어 쓰레기 중 재활용품을 선별 작업하고 폐기쓰레기는 압축하여 쓰레기 부피를 감소시켜 쓰레기 운반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p> <p>○시설결정에는 동의 의견이나, 인근 지역에서 자연환경 저해를 이유로 반대의견 (7건)이 있으므로 현지확인 등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후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p> <p>5. 심사결과 보류</p> <p>.....</p> <p>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의 안</td><td style="width: 5%;">번 호</td><td style="width: 90%;">제출년월일 : 1993. 8.2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td></tr> </table>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p> <p>○위치 : 서초구 원지동 23 일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시설 결정 : <math>A = 14,639m^2</math></li> <li>• 진입도로결정 : <math>B = 15m, L = 110m</math></li> <li>•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 : <math>A = 359,843.7m^2 \rightarrow 359,315.7m^2</math> (감 <math>528m^2</math>)</li> <li>• 도시 계획사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일부)유통업무설비</li> <li>•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 7건(교통체증 가중 및 주변자연환경 저해가 우려됨으로 반대-미반영)</li> </ul>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1993. 8.2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1993. 8.2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다음 페이지에 계속)	339			

## ○ 입안 내용

시설명	변경내용 (㎡)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갈현근린공원	149,207	감 562	148,645	학교와 중복결정 부분

## ○ 추가결정 지역 현황

- 면적 : 562㎡(소유주 : 정복학원)
  - 도시계획사항 :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  
(공원, 학교)
  - 토지현황 : 갈현 근린공원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으로 학교 건물 등 시설이 점유하고 있어 공원회복이 불가능함.
  - 4. 위치 : 은평구 불광동 445-39일대
  - 5. 추진경위
    - '71. 8. 6 : 갈현공원 결정(건고 제465호)
    - '76. 6.21 : 학교용지 결정(서고 제135호)
    - '77. 7. 9 : 갈현근린공원 변경(재정비) 결정  
(건고시 제138호)
    - '92. 1.21 : 불합리한 도시계획 재정비 자료  
송부(시→구청)  
학교와 중복결정 부분 공원 변경
-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 번호	840
-------	-----

제출년월일 : 1993. 9.16.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건명 : 노원구 월계동 1번지 7호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2. 제안이유

○ 동부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발생된 폐천부지에 골재 적치장 및 자동차 수리센터 등이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역으로

○ 노원구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공원조성을 위하여 '94년부터 '96년까지 종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용지 결정을 요구함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임.

※ 하수국에서 동부고속도로가 준공('93.12.31) 되면 폐천부지를 양여받은 후 공원용지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폐천부지 양여시까지 하천시설을 존치하고 노원구 재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시행이 되도록 공원용지를 우선 결정코자 함.

3. 주요요지

## ○ 입안 내용

시설명	변경내용 (㎡)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근린공원		증 20,300	20,300	

## ○ 추가결정 지역 현황

- 면적 : 20,300㎡(국·공유지 : 8,772 ㎡, 사유지 : 11,528㎡)
- 도시계획사항 : 자연녹지지역, 하천(일부)
- 토지현황
  - 동부고속도로변의 자연녹지지역 내 일

부 하천용지로서 동부고속도로와 월계시영아파트측 25m 도로로 구획되어 있는 지역으로  
- 골재 적치장 및 자동차수리센터 등이 난립되어 도시미관에 저해의 요인이 되고 있음.

<p>4. 위치 : 노원구 월계동 1번지 7호 일대</p> <p>5. 추진경위</p> <p>○'92. 5. 4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요청(노원구→서울시)</p> <p>○'92. 5.21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요청 보완지시(도시계획국→노원구) - 하천유지 관리상 지장유무 검토 보완</p> <p>○'93. 8. 9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보완요청(노원구→서울시)</p> <p>○'93. 8.25 : 관련부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국-동부고속도로 준공후 폐천부지를 양여받아 도시계획 결정</li> <li>• 공원과-보상계획이 수립되었으므로 주위환경 등을 종합검토 후 공원결정</li> </ul> <hr/> <p>특정가구 정비지구 해제 및 도심지 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p>	<p>1. 건명 : 세종로 및 금문도 특정가구 정비지구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p> <p>가. 제안이유(세종로 특정가구 정비지구)</p> <p>- 74년도 계획된 건축계획은 최근에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고 계획내용도 기준도로를 중심으로 건물규모만을 지정해 놓아 건물 및 토지이용계획에서 뒤떨어짐.</p> <p>- 소규모 필지의 소유주들이 합동으로 재건축하기에는 특가구 사업성격상 주민자발적인 개발에 의존하고 또한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더이상 개발가능성이 없으므로 특정가구 정비지구 해제로 함.</p> <p>(금문도 특정가구 정비지구)</p> <p>- 문화재(원구단) 인접 관계로 새로이 효율적인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삼익분구는 건축이 불가능하며 관공공사는 기 사업이 완료되었고</p> <p>- 그 외 4개분구는 건물상태가 양호하여 존치지구로 되어 있으므로 더이상 개발의 여지가 없으므로 특정가구 정비지구 해제를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것임.</p>
의안 번호	849

#### 나. 주요요지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세 종로 특 정 가구정비지구	종로구 세종로, 종로1가 일부지역	18,235㎡	- 6개분구중 현대분구만 사업완료 - 5개분구는 사업미시행
금문도 특 정 가구정비지구	중구 을지로1가 소공동 일부지역	21,851㎡	- 6개분구중 관광공사분구 사업완료 - 4개분구 기존건물 존치 - 삼익분구 사업미시행

2. 세종로 도심지 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여 도심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코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임.
가. 제안이유 : 개발가능성이 회박한 특정가구 정비지구를 해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경관의 조성을 위하여	나. 주요요지 • 면적 : 15,656m <sup>2</sup> (4,736평) 국공유지 : 2,796m <sup>2</sup> (846평)

<p>시유지 : 12,860㎡(3,890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 75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 25동</li> <li>– 연와·석조 : 7동</li> <li>– 목조 : 40동</li> <li>– 세멘브릭조 : 3동</li> </ul> </li> <li>• 가구수 : 29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옥수 : 4가구</li> <li>– 세입자 : 25가구</li> </ul> </li> <li>• 도시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1종미관지구, 주차장정비지구, 특정가구정비지구</li> </ul> <p>다. 위치 : 종로구 당주동·세종로동·신문로1가동 일대</p> <p>도시계획(도로, 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의안 번호</td><td style="padding: 2px;">853</td><td style="padding: 2px;">제출년월일 : 1993.10.13.</td></tr> <tr> <td colspan="2"></td><td style="padding: 2px;">제출자 : 서울특별시장</td></tr> </table>	의안 번호	853	제출년월일 : 1993.10.13.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p>1. 건명 : 도시계획(도로, 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 결정</p> <p>2. 제안이유 : 종량구 신내동 일대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313천평)에 따른 교통량증가로 화랑로에서 망우로 간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기존의 B=15m 도시계획 도로를 B=25~32m로 확폭 개설하여 동일로, 망우로, 화랑로의 교통을 분산처리코자 하며, 동 도로의 양측에 각각 폭 12m의 미관지구를 지정하여 도시의 미관을 유지코자 함.</p>																										
의안 번호	853	제출년월일 : 1993.10.13.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p>3. 주요요지</p> <p>○ 입안내용</p> <p>– 도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th>등급</th><th>유별</th><th>폭원(m)</th><th>연장(m)</th><th>기점</th><th>종점</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기정</td><td>대로</td><td>2</td><td>30</td><td>1,214</td><td>신내동 595-6</td><td>신내동 674-1</td><td>신내동 594~망우동 489-2간 L=806m</td></tr> <tr> <td>기정</td><td>중로</td><td>2</td><td>15</td><td>806</td><td>신내동 594</td><td>망우동 489-2</td><td>폭원확장(B=15→25~32m)</td></tr> <tr> <td>변경</td><td>대로</td><td>2</td><td>25~32</td><td>2,020</td><td>망우동 489-2</td><td>신내동 674-1</td><td></td></tr> </tbody> </table>			구분	등급	유별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기정	대로	2	30	1,214	신내동 595-6	신내동 674-1	신내동 594~망우동 489-2간 L=806m	기정	중로	2	15	806	신내동 594	망우동 489-2	폭원확장(B=15→25~32m)	변경	대로	2	25~32	2,020	망우동 489-2	신내동 674-1	
구분	등급	유별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기정	대로	2	30	1,214	신내동 595-6	신내동 674-1	신내동 594~망우동 489-2간 L=806m																											
기정	중로	2	15	806	신내동 594	망우동 489-2	폭원확장(B=15→25~32m)																											
변경	대로	2	25~32	2,020	망우동 489-2	신내동 674-1																												
<p>– 미관지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th>종별</th><th>연장(m)</th><th>면적(㎡)</th><th>기점</th><th>종점</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결정</td><td>5종</td><td>793</td><td>19,032</td><td>신내동 594</td><td>망우동 489</td><td>* 도로양측 각 12m</td></tr> </tbody> </table>			구분	종별	연장(m)	면적(㎡)	기점	종점	비고	결정	5종	793	19,032	신내동 594	망우동 489	* 도로양측 각 12m																		
구분	종별	연장(m)	면적(㎡)	기점	종점	비고																												
결정	5종	793	19,032	신내동 594	망우동 489	* 도로양측 각 12m																												
<p>○ 지역현황</p> <p>–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p> <p>–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 24건</p> <p>• 의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권 행사제한 및 기존 4차선 도로만으로 충분하므로 도로확장 반대</li> <li>– 현시가로 충분한 보상 요구함.</li> </ul> </p>																																		
<p>– 시행계획</p> <p>– 사업기간 : '94. 1~'95.12, 사업비 : 368억원</p> <p>– 시행자 : 서울시도시개발공사</p> <p>– 저촉부지(254필지 7,525평)</p> <p>– 사유지 : 198필지(5,100평)</p> <p>– 국·공유지 : 56필지(2,425평)</p> <p>4. 추진경위</p> <p>○ 93. 6.30 ~ 93. 7.13 :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p>																																		

<p>공람공고 ○ 93. 9.15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요청 * 당초 도시계획시설(B=15m) 결정 : 서고시 제154호 ('74.10.23)</p> <p>도시계획(지역)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px;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td>의안</td><td>870</td></tr> <tr><td>번호</td><td></td></tr> </table> <p>제출년월일 : 1993.11.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p> <p>1. 개요 ○ 변경사항 : 자연녹지지역 →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위치 : 관악구 신림동 101번지 일대 ○ 면적 : 124,757m<sup>2</sup></p> <p>2. 상정사유 ○ 대상지역은 노후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으로 공원 및 녹지 기능을 완전 상실하였</p> <p>○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조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px;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td>구역명</td><td>위치</td><td>면적 (m<sup>2</sup>)</td><td>비고</td></tr> <tr><td>이문4동</td><td>동대문구 이문동 83번지 일대</td><td>12,186</td><td>신규지정</td></tr> </table> <p>○ 구역현황 - 면적 : 12,186m<sup>2</sup> (국공유지 393, 사유지 11,793) - 건축물 : 124동 (유허가) - 가구수 : 293세대 (가옥주 124, 세입자 169세대)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 주민동의 : 구역지정신청시 76.6%, 주민공람시 67.7%</p> <p>금호1 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p>	의안	870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m <sup>2</sup> )	비고	이문4동	동대문구 이문동 83번지 일대	12,186	신규지정	<p>으며, 기능회복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불량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함.</p> <p>3. 참고사항 ○ 도시계획사항 : 도시계획 용도지역 - 자연녹지 지역 ○ 공람주민의견청취 결과 : 의견 없음 ○ 용도지역 변경 결정 결정권자 : 시장</p> <p>이문4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px;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td>의안</td><td>872</td></tr> <tr><td>번호</td><td></td></tr> </table> <p>제출년월일 : 1993.11. 2.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p> <p>1. 건명 : 이문4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 2. 제안이유 : 이문4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코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p> <p>○ 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지정 ○ 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지정 - 면적 : 12,186m<sup>2</sup> (국공유지 393, 사유지 11,793) - 건축물 : 124동 (유허가) - 가구수 : 293세대 (가옥주 124, 세입자 169세대)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 주민동의 : 구역지정신청시 76.6%, 주민공람시 67.7%</p> <p>금호1 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p>	의안	872	번호	
의안	870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m <sup>2</sup> )	비고														
이문4동	동대문구 이문동 83번지 일대	12,186	신규지정														
의안	872																
번호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주택기량재개발구역변경지정

구역명	위치	면적 (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금호1	성동구 금호동 328번지 일대	261,608.4	266,467.4	증 4,859	일부추가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일부공원

## 관한 의견청취

○주민동의 : 100%

○변경사유 : 금번 추가코자 하는 금호1-6 구역은 요철이 심한 부분의 토지로서 동 재개발사업과 병행시 행함이 토지이용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 추가지정코자 함.

의안	874
번호	

제출년월일 : 1993.11. 2.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건명 : 옥수7 주택기량재개발구역변경지정
- 제안이유 : 옥수7 주택기량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코자 하는 것임.
- 주요요지

옥수7 주택기량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

## ○주택기량재개발구역변경지정

구역명	위치	면적 (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옥수7	성동구 옥수동 4번지 일대	46,619	28,796	감 17,823	일부해제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일부공원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주민동의 : 66.4%

○변경사유 : 본구역은 옥수제7구역으로 사업시행상 4개지구로 분리 시행된 지역이며, 옥수7-1은 기준공, 7-2는 '88.12.31.자 지구해제되고 남은 잔여지로 주민의 호응도가 낮아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 방치된 지구로서 사업시행의 가능성이 없어 지구해제 코자 함.

의안	905
번호	

제출일자 : 1993. 8.24.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건명 : 경복궁주변 고도지구 변경 결정
- 제안이유 : 고도지구지정으로 인한 집단민원의 해소와 균형된 도시발전 및 주거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최고고도지구를 지역 여건에 맞게 변경결정코자 함.
- 주요요지

## ○ 입안내용

구 분	위 치	고도제한 및 면적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경복궁주변	계	1,189,800m <sup>2</sup>	1,189,800m <sup>2</sup>	
고도지구 (최고고도) 변경결정	종로구 청운, 효자, 창성, 궁정, 통의, 삼청, 적선, 팔관, 가회, 화, 소격, 재, 안국, 사간, 송현동일대	현 지반고로부 터 10m 이하 (732,772m <sup>2</sup> )	현 지반고로부 터 15m 이하 (732,772m <sup>2</sup> )	고도제한 내용변 경(10m 이하→ 15m 이하)
	종로구 청운, 신교, 궁정, 옥인, 통인, 누상, 누하, 체부, 필운동일대	현 지반고로부 터 15m 이하 (415,800m <sup>2</sup> )	현 지반고로부 터 18m 이하 (415,800m <sup>2</sup> )	고도제한 내용변 경(15m 이하→18 m 이하)
	종로구 재동 83일대	현 지반고로부 터 20m 이하 (13,800m <sup>2</sup> )	현 지반고로부 터 20m 이하 (13,800m <sup>2</sup> )	
	종로구 소격동 165일대	현 지반고로부 터 25m 이하 (27,428m <sup>2</sup> )	현 지반고로부 터 25m 이하 (27,428m <sup>2</sup> )	변경없음

○ 현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  
비지구, 고도지구, 미관  
(2,3,4종)지구

## 4. 추진경위

○ 77. 5. 9 고도지구 결정 519,000m<sup>2</sup> (서고시  
제139호)

○ 77.10.31 변경결정(추가지정) 1,189,900m<sup>2</sup>  
(서고시 제386호)

## 5. 이의신청접수 : 3건 주민 1,630인

○ 고도제한 10m를 18~30m로 15m를 30  
~50m로 완화요망

도시계획시설(공원, 광장)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 안 번 호	911
------------	-----

제출년월일 : 1993.11.29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광장) 변경  
결정
2. 제안이유 : 천호대로(B=50m)와 동부간선도  
로의 교차점에 위치한 기히  
개설완료 된 현황상 광장이나  
구획정리사업(장안지구) 환지확  
정시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쳐  
분하지 아니하고 공원으로 확  
정처분되어 있는 바, 이를 현  
황에 맞게 광장으로 변경 결  
정코자 함(감사원 감사시 지적  
사항임)

3. 주요요지					
○ 입안내용					
구분	시설명	면적(m <sup>2</sup> )	증·감(m <sup>2</sup> )	위 치	비 고
기정	공원	5,641		동대문구 장안동 204 성동구 군자동 328	장안동 2,840m <sup>2</sup> 군자동 2,801m <sup>2</sup>
변경	공원	0	감) 5,641	동대문구 장안동 204 성동구 군자동 328	공원폐지 후 광장으로 변경
기정	광장	42,600		동대문구 장안동 204일대	
변경	광장	60,000	증) 17,400	동대문구 장안동 204일대	장안동 9,020m <sup>2</sup> 군자동 8,380m <sup>2</sup>

  

○ 지역현황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원, 주차장정비지구									
— 공람공고서 주민의견 : 없음.									
4. 추진경위									
○ 공람공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동구청 : 93. 7.23~8. 6 <input type="checkbox"/> 동대문구청 : 93. 8. 5~8.18 ○ 공원결정 : 76. 6.25(건설부 고시 제77호 : 장안지구환지획정처분) ○ 광장결정 : 90.10.13(건설부 고시 제695호)									
수유2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의 안</td><td>912</td></tr> <tr> <td>번 호</td><td></td></tr> </table> 제출년월일 : 1993.11.29.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수유2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 2. 제안이유 : 수유2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코자 하는 것임						의 안	912	번 호	
의 안	912								
번 호									

  

3. 주요요지					
○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조서					
구역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수유2	도봉구 수유동 260번지 일대	28,274	신규지정		
○ 구역현황	— 주민동의 : 81.2%				
— 면적 : 28,274m <sup>2</sup> (국·공유지 1,722.7, 사유지 26,551.3)	.....				
— 건축물 : 202동(유허가 196, 무허가 6)	.....				
— 가구수 : 516세대(가옥주 226, 세입자 290)	.....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구	.....				
○ 구역현황	— 주민동의 : 81.2%				
— 면적 : 28,274m <sup>2</sup> (국·공유지 1,722.7, 사유지 26,551.3)	.....				
— 건축물 : 202동(유허가 196, 무허가 6)	.....				
— 가구수 : 516세대(가옥주 226, 세입자 290)	.....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구	.....				
○ 구역현황	— 주민동의 : 81.2%				
— 면적 : 28,274m <sup>2</sup> (국·공유지 1,722.7, 사유지 26,551.3)	.....				
— 건축물 : 202동(유허가 196, 무허가 6)	.....				
— 가구수 : 516세대(가옥주 226, 세입자 290)	.....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구	.....				
○ 구역현황	— 주민동의 : 81.2%				
— 면적 : 28,274m <sup>2</sup> (국·공유지 1,722.7, 사유지 26,551.3)	.....				
— 건축물 : 202동(유허가 196, 무허가 6)	.....				
— 가구수 : 516세대(가옥주 226, 세입자 290)	.....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구	.....				

1. 건명 : 홍제14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 2. 제안이유 : 홍제14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코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조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역명</th> <th>위치</th> <th>면적(m<sup>2</sup>)</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홍제14</td> <td>서대문구 홍제동 43번지 일대</td> <td>21,702</td> <td>신규지정</td> </tr> </tbody> </table>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홍제14	서대문구 홍제동 43번지 일대	21,702	신규지정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홍제14	서대문구 홍제동 43번지 일대	21,702	신규지정						
○ 구역현황	냉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 21,702 m<sup>2</sup> (국·공유지 11,268, 사유지 10,434)</li> <li>- 건축물 : 125동 (유허가 69, 무허가 56)</li> <li>- 가구수 : 304세대 (가옥주 140, 세입자 164)</li> <li>-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구</li> <li>- 주민동의 : 90.1%</li> </ul>	<table border="1"> <tr> <td>의안 번호</td> <td>914</td> </tr> </table> <p>제출년월일 : 1993.11.29.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p>	의안 번호	914						
의안 번호	914								
3. 주요요지	<p>1. 건명 : 냉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 2. 제안이유 : 냉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코자 하는 것임</p>								
○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조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역명</th> <th>위치</th> <th>면적(m<sup>2</sup>)</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냉천</td> <td>서대문구 냉천동 72번지 일대</td> <td>13,007</td> <td>신규지정</td> </tr> </tbody> </table>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냉천	서대문구 냉천동 72번지 일대	13,007	신규지정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냉천	서대문구 냉천동 72번지 일대	13,007	신규지정						
○ 구역현황	청량리5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 13,007 m<sup>2</sup> (국·공유지 850.8, 사유지 12,156.2)</li> <li>- 건축물 : 130동 (유허가 129, 무허가 1)</li> <li>- 가구수 : 243세대 (가옥주 107, 세입자 136)</li> <li>-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구</li> <li>- 주민동의 : 92.3%</li> </ul>	<table border="1"> <tr> <td>의안 번호</td> <td>915</td> </tr> </table> <p>제출년월일 : 1993.11.29.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p>	의안 번호	915						
의안 번호	915								
3. 주요요지	<p>1. 건명 : 청량리5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 2. 제안이유 : 청량리5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코자 하는 것임</p>								
○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조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역명</th> <th>위치</th> <th>면적(m<sup>2</sup>)</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청량리5</td> <td>동대문구 청량리동 214번지 일대</td> <td>16,959</td> <td>신규지정</td> </tr> </tbody> </table>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청량리5	동대문구 청량리동 214번지 일대	16,959	신규지정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청량리5	동대문구 청량리동 214번지 일대	16,959	신규지정						

○ 구역 현황		○ 건 명 : 을지로 5·6가 특정가구정비지구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	
— 면적 : 16,959 m <sup>2</sup> (국·공유지 8,236, 사유지 8,723)		가. 제안이유	
— 건축물 : 182동 (유허가 83, 무허가 99)		— 지구내 토지현황이 미군기지(미공병단), 중구 구민회관, 구현법재판소 등 공공 시설부지가 대부분이고 시민소유 토지는 전체의 13.6%로 특정가구존치의 필요성이 적은 편이며, 미군기지(공병단)의 이전시기가 불분명하며 시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상 유동성이 있으므로 우선 특정가구를 해제한 뒤 현실적인 토지이용방안을 입안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구 수 : 353세대 (가옥주 188, 세입자 165)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구			
— 주민동의 : 73.1%			
특정가구정비지구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 번호	918	제출년월일	1993.12. 4.
		제출자	서울특별시장

## 나. 주요요지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을지로5·6가 특정가구정비지구	중구 을지로5·6가, 방산동, 일부지역	70,000	사업계획미정

금호, 옥수 풍치지구 변경(일부해제)에 관한 의견청취	1. 건명 : 금호, 옥수 풍치지구 변경(일부해제)
의안 번호	2. 제안이유 : 금호제8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과 관련 구역 내 풍치지구를 해제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청취로자 하는 것임
921	

## 3. 주요요지

○ 금호, 옥수 풍치지구 변경(일부해제) 결정 조서

지구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금호, 옥수지구	성동구 금호동, 옥수동 일대	660,315	611,845	금호제8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변경임 (감48,470m <sup>2</sup> )

○ 구역 현황	— 건축물 : 505동 (유허가 319, 무허가 186)
— 면적 : 55,430 m <sup>2</sup> (국·공유지 19,038, 사유지 36,392)	— 가구 수 : 1,238세대 (가옥주 526, 세입자 712)

<p>—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 지구, 풍치지구(일부), 응 봉제1근린공원(일부), 미관 지구(일부)</p> <p>— 주민동의율 : 91.5%</p> <p>○ 추진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2. 7. 6 :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본회의 에서 재개발구역 지정안 가결</li> <li>— '92. 7. 9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 의에서 재개발 구역지정안 가 결</li> <li>— '92.12.10 : 재개발 구역 지정안 부결 통 보(건설부→시)</li> </ul> <p>※내 용 : 도시계획 측면을 감안할 때</p>	<p>당해구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합함.</p> <p>— '93.11.12 : 용도지구(풍치지구)변경 입안 (성동구)</p> <p>.....</p> <p>길음1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px;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padding: 2px;">의 안</td><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center;">923</td></tr> <tr> <td style="padding: 2px;">번 호</td><td></td></tr> </table> <p>제출년월일 : 1993.12. 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 명 : 길음1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li> <li>2. 제안이유 : 길음1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코자 하는 것임</li> </ol>	의 안	923	번 호									
의 안	923												
번 호													
<p>3. 주요요지</p> <p>○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조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 padding: 2px;">구 역 명</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위 치</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면 적(m<sup>2</sup>)</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비 고</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 2px;">도 원</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성북구 길음1동 547번지 일대</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46,525</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신 규 지 정</td></tr> </tbody> </table>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도 원	성북구 길음1동 547번지 일대	46,525	신 규 지 정	<p>.....</p> <p>상도3 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px;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padding: 2px;">의 안</td><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center;">944</td></tr> <tr> <td style="padding: 2px;">번 호</td><td></td></tr> </table> <p>제출년월일 : 1994. 1.1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 명 : 상도3 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신 규)</li> <li>2. 제안이유 : 상도3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한 것임</li> </ol>	의 안	944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도 원	성북구 길음1동 547번지 일대	46,525	신 규 지 정										
의 안	944												
번 호													
<p>3. 주요요지</p> <p>○ 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 padding: 2px;">구 역 명</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위 치</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면 적(m<sup>2</sup>)</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비 고</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 2px;">상 도 3</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동작구 상도동 348일대</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16,208</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신 규 결 정</td></tr> </tbody> </table>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상 도 3	동작구 상도동 348일대	16,208	신 규 결 정	<p>.....</p> <p>○ 지역현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p>— 면 적 : 16,208m<sup>2</sup>(국·공유지 1,839m<sup>2</sup>, 사유지 14,369m<sup>2</sup>)</p> <p>— 건 축 물 : 140동(유허가 121동, 무허가</p> </td><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p>19동)</p> <p>— 가 구 수 : 249세대(가옥주 138세대, 세입 자 111세대)</p> <p>—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4종미관지구</p> </td></tr> </table>	<p>— 면 적 : 16,208m<sup>2</sup>(국·공유지 1,839m<sup>2</sup>, 사유지 14,369m<sup>2</sup>)</p> <p>— 건 축 물 : 140동(유허가 121동, 무허가</p>	<p>19동)</p> <p>— 가 구 수 : 249세대(가옥주 138세대, 세입 자 111세대)</p> <p>—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4종미관지구</p>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상 도 3	동작구 상도동 348일대	16,208	신 규 결 정										
<p>— 면 적 : 16,208m<sup>2</sup>(국·공유지 1,839m<sup>2</sup>, 사유지 14,369m<sup>2</sup>)</p> <p>— 건 축 물 : 140동(유허가 121동, 무허가</p>	<p>19동)</p> <p>— 가 구 수 : 249세대(가옥주 138세대, 세입 자 111세대)</p> <p>—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4종미관지구</p>												

<p>— 주민동의율 : 93%</p> <p>4. 추진경위</p> <p>○'93. 8.28 : 재개발구역지정 요청(구→시)</p> <p>○'93. 9.22/'93.11.10 : 보완지시(시→구)</p> <p>※보완지시내용 : 신청지에 연립주택을 포함하여야 하는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p> <p>○'93.12. 9 : 보완서류 제출(구→시)</p> <p>※보완내용 : 연립주택 제외</p> <p>5. 지정사유</p> <p>당해구역은 일부 양호한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으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도로·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상도동길 지반과 요청지와의 고저차</p>	<p>가 심하여 주민들이 계단으로 통행하는 등의 지역여건이 열악하므로 동구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p> <p>.....</p> <p>상도6 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px;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padding: 2px;">의 안</td><td style="padding: 2px;">945</td></tr> <tr> <td style="padding: 2px;">번 호</td><td></td></tr> </table> <p>제출년월일 : 1994. 1.11.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p> <p>1. 건명 : 상도6 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신규) 2. 제안이유 : 상도3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한 것임.</p>	의 안	945	번 호									
의 안	945												
번 호													
<p>3. 주요요지</p> <p>○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 padding: 2px;">구역명</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위치</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면적(m<sup>2</sup>)</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비고</th></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2px;">상도6</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동작구 상도동 산49-78 혹석동 239-100번지 일대</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40,403</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신규 결정</td></tr> </tbody> </table> <p>○지역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 40,403m<sup>2</sup>(국·공유지 28,084m<sup>2</sup>, 사유지 12,319m<sup>2</sup>)</li> <li>— 건축물 : 122동(유허가 49동, 무허가 73동)</li> <li>— 가구수 : 322세대(가옥주 148세대, 세입자 174세대)</li> <li>—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현충묘지공원)</li> <li>— 주민동의율 : 93%</li> </ul> <p>4. 추진경위</p> <p>○'93. 8.27 : 재개발구역지정 요청(구→시)</p> <p>○'93. 9.22/'93.11.10 : 보완지시(시→구)</p> <p>※보완지시내용 : 신청지에 연립주택을 포함하여야 하는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p> <p>○'93.12. 1 : 보완서류 제출(구→시)</p> <p>※보완내용 : 연립주택을 재건축으로 할 경우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인근지역 토지매입·건물보상·공</p>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상도6	동작구 상도동 산49-78 혹석동 239-100번지 일대	40,403	신규 결정	<p>사비 등 30억원 이상이 소요되므로 재개발구역내에 포함시키는 것이 효율적임.</p> <p>5. 지정사유</p> <p>당해구역은 대부분 3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변지역보다 고지대에 위치하여 환경미관 불량 및 상·하수도시설이 미비한 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며, 현충묘지공원의 해체를 최소화하여 존치공원 내 무허가건물을 정비한 후 청손된 공원기능을 되살려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함.</p> <p>.....</p> <p>제기2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px;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padding: 2px;">의 안</td><td style="padding: 2px;">946</td></tr> <tr> <td style="padding: 2px;">번 호</td><td></td></tr> </table> <p>제출년월일 : 1994. 1.11.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p> <p>1. 건명 : 제기2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p>	의 안	946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상도6	동작구 상도동 산49-78 혹석동 239-100번지 일대	40,403	신규 결정										
의 안	946												
번 호													

2. 제안이유 : 제기2 주택 개량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코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주택 개량재개발구역지정조서					
구 역 명	위 치				
제 기 2	동대문구 제기동 122-200일대				
면 적(m <sup>2</sup> )	비 고				
41,940	신 규 지 정				
○구역현황					
—면적 : 41,940 m <sup>2</sup> (국 · 공유지 2,363, 사유지 39,577)	지구 —주민동의율 : 71%				
—건축물 : 262동(유허가 235, 무허가 27)	..... 종로구 구기, 평창동일대 용도지역,				
—가구수 : 597세대(가옥주 257, 세입자 340)	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	의 안 번 호 948 제출년월일 : 1994. 1.20.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개 요					
구 분	도시 계획 사 항	위 치	기 정	증 · 감	변 경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종로구 구기 · 평창동일대	292,165,598	증 2,331	292,167,929
	전용주거지역	"	5,343,111	감 2,331	5,340,780
용도지구	풍치지구	종로구 부암 · 구기 · 평창동	2,010,916	감 2,584	2,008,332
	고도지구	종로구 구기 · 평창동	66,348	감 318	66,030
2. 상정사유					
○북한산 국립공원에 연접한 종로구 구기동, 평창동 일대의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된 개발을 유도하여 자연경관을 보전하고자	지역, 풍치지구, 고도지구 ○종로구청 공람기간 주민의견청취 결과 : 의견 없음.				
○1993.4.21 서울시 고시 제122호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하였으나 이종 일부가 착오로 중복 결정되어 정정코자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입안상정된 사안임.	○용도지역, 지구변경 결정권자 : 시장 .....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3. 참고사항					
○현재의 도시계획	의 안 번 호 951 제출년월일 : 1994. 1.25.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구기동 지역 : 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 풍치지구	1. 개 요 ○위 치 : 양천구 목동아파트 7단지 일대 외 7개소				
• 평창동 지역 : 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	○규 모 : 지하철 5호선				

<p>정거장 변경 : 2개소(목동·오목교정거장) 환기구 신설 : 4개소 환기구 변경 : 2개소</p> <p>2. 제안 사유</p> <p>○ 목동·오목교정거장 : 정거장 출입구·환기구·집수정·정화조·변전실 등 기능실 확보를 위한 추가결정(증 7,635m<sup>2</sup>)</p> <p>○ 환기구 신설 : 4개소(증 1,936m<sup>2</sup>)</p> <p>○ 환기구 변경 : 2개소(1개소 위치변경, 1개소 폐지)</p> <p>3. 추진 경위</p> <p>○ '90.10.31 : 지하철 5호선 결정(건설부 고시)</p> <p>3. 입안 요지</p> <p>○ 내용</p>	<p>제695호) ○ '93.12.9~'93.12.22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주민의견 없음</p> <p>.....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margin-bottom: 10px; width: 100px; text-align: center;"> <tr> <td>의안 번호</td> <td>952</td> </tr> </table> <p>제출년월일 : 1994. 1. 25.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p> <p>1. 건명 :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2. 제안이유 : 경인복복선상 구로~개봉역 중간 양천변에 구입전철역사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 목적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시설명</th> <th rowspan="2">시설의세분</th> <th rowspan="2">위치</th> <th colspan="2">규모</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연장(km)</th> <th>면적(m<sup>2</sup>)</th> </tr> </thead> <tbody> <tr> <td>기정</td> <td>철도</td> <td>일반철도 (경인선)</td> <td>구로역~온수동시계</td> <td>5.9</td> <td>364,513</td> <td>구일역사 신축에 따른 면적변경(증 2,030m<sup>2</sup>)</td> </tr> <tr> <td>변경</td> <td>"</td> <td>"</td> <td>"</td> <td>5.9</td> <td>366,543</td> <td></td> </tr> </tbody> </table> <p>○ 지역 현황 - 도시계획 사항 : 자연녹지지역, 하천(안양천) -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 없음.</p> <p>4. 참고사항</p> <p>○ 사업명 : 구로구~인천간 경인복복선 전철 구일역사 신축 기타 공사</p> <p>○ 위치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42-76 일대</p> <p>○ 사업기간 : '94.3~'95.3</p> <p>○ 사업시행자 : 철도청</p> <p>○ 사업규모 : 역사 1,467.44m<sup>2</sup> (RC조 지상 2층, 지하1층 평지붕) 역광장 370.35m<sup>2</sup> 육교 1개소</p> <p>※ '93.8.5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p> <p>용(구일역사 및 전철교량 설치) 승인 받음. ..... 도시계획시설(철도·유통업무설비)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p>제출년월일 : 1994. 1. 25.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p> <p>1. 개요 ○ 위치 : 8호선 : 강동구 암사동~송파구 장지동 3호선 연장구간 : 송파구 장지동</p> <p>○ 규모 가) 지하철 8호선(서울시 구간) - 본선 신설 : 4.52km(2단계 구간) - 정거장 신설 : 4개소(암사·천호·강</p>	의안 번호	952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규모		비고	연장(km)	면적(m <sup>2</sup> )	기정	철도	일반철도 (경인선)	구로역~온수동시계	5.9	364,513	구일역사 신축에 따른 면적변경(증 2,030m <sup>2</sup> )	변경	"	"	"	5.9	366,543	
의안 번호	952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규모		비고																				
				연장(km)	면적(m <sup>2</sup> )																					
기정	철도	일반철도 (경인선)	구로역~온수동시계	5.9	364,513	구일역사 신축에 따른 면적변경(증 2,030m <sup>2</sup> )																				
변경	"	"	"	5.9	366,543																					

<p>동구청 · 몽촌토성역)</p> <p>— 정거장 변경 : 7개소(잠실 · 석촌 · 송파 · 가락시장 · 문정 · 장지 · 복정역)</p> <p>— 환기구 신설 : 24개소</p> <p>유통업무설비 변경 : 538,500→538,076 m<sup>3</sup>(감 424m<sup>3</sup>)</p> <p>나) 지하철3호선 연장구간 — 환기구 신설 : 1개소</p> <p>2. 제안 사유</p> <p>○ 지하철 8호선 제2단계 구간(암사동~잠실동) 본선 및 정거장 신설과, 제1단계 구간(잠실동~장지동) 정거장 변경 및 환기구 신설</p> <p>○ 정거장 및 부대시설과 종복된 유통업무설비 일부 축소 변경</p> <p>○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유치선내 환기구 신설</p> <p>3. 추진경위</p> <p>○'91. 7.15 : 지하철 8호선 결정(잠실~장지동)</p> <p>3. 주요입안 요지</p> <p>○ 입안내용</p>	<p>○'90.11. 7 :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유치선) 결정 ○'93.12. 9~'93.12.22 —</p> <p>.....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px;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padding: 2px;">의 안</td><td style="padding: 2px;">954</td></tr> <tr> <td style="padding: 2px;">변 호</td><td></td></tr> </table> <p>제출년월일 : 1994. 1.25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p>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 2. 제안사유 :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역점 추진 중인 2기 지하철 6호선을 결정, 건설함으로써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함.</p>	의 안	954	변 호	
의 안	954				
변 호					
<p>○ 지역현황</p> <p>— 도시계획 사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개발제한구역</p> <p>—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 북가좌정거장→와산정거장으로 명칭변경 요구</p> <p>* 반영여부 : 별도 검토(서울시지명심사위</p>	<p>원회 상정예정)</p> <p>4. 참고 사항</p> <p>○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제6호선 노선지정: '93. 4.13(교통부 고시 제93-5호)</p> <p>○ 공람공고 : '93.12.21~'94.1.4</p> <p>.....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p>				

## 226 (第68回—第4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의 안 번 호</td><td style="width: 15%;">955</td><td style="width: 60%;">제출년월일 : 1994. 1.25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td><td style="width: 10%;"></td></tr> </table> <p>1. 건명 :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 2. 제안사유 : 구로~서울역간 3복선의 서울역</p> <p>3. 주요 요지 ○입안 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시설명</th><th rowspan="2">시설의세분</th><th rowspan="2">위치</th><th colspan="2">규모</th><th rowspan="2">비고</th></tr> <tr> <th>폭원(m)</th><th>연장(m)</th></tr> </thead> <tbody> <tr> <td>기정 철도</td><td>일반철도 (용산선) 효창역</td><td>용산구 문배동 3의 7~용문동 5의 187</td><td></td><td>12.3</td><td>1,113</td><td>용산~효창간 반복선 설치로 폭원확장 (12.3→16.9~29.2m)</td></tr> <tr> <td>변경</td><td>"</td><td>"</td><td>"</td><td>12.3 16.9~29.2</td><td>1,113</td><td></td></tr> </tbody> </table> <p>○지역현황 — 도시계획 사항 :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 지역, 녹지, 도로, 철도 — 공람공고서 주민 의견 : 없음 4. 참고사항(시행계획)</p> <p>— 사업명 : 서울~구로간 3복선 시설변경에 따른 전동차 반복선 건설사업 — 위치 : 용산구 원효로 일원 — 사업기간 : 1992.11~1994 — 사업시행자 : 철도청장 — 노선연장 : 1.9km(용산~효창)</p> <p>— 정차장 : 2개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역명</th><th>역사형식</th><th>환승노선</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용산</td><td>지상역사(현 용산역)</td><td>경인선, 경원선, 경수선</td><td>환승역</td></tr> <tr> <td>효창</td><td>신하역사(신설)</td><td></td><td></td></tr> </tbody> </table> <p>.....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의 안 번 호</td><td style="width: 15%;">957</td><td style="width: 70%;">제출년월일 : 1994. 1.25.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td><td style="width: 10%;"></td></tr> </table> <p>1. 건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2. 제안사유</p> <p>○북부간선도로 건설구간 내 주거환경보호 및 사업완료 후 자동차 추락에 의한 2차 사고예방을 위하여 환경시설대로 결정 (도로 양측 각 10m) 하였으나, ○동 시설대에 저축된 건물 4동이 극히 일부분 저축으로 철거시 건물의 구조 및 안정에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또한 해당 주민은 건물 및 토지 확대 보상을 요구하는 실정으로 확대보상시 과다한 보</p>	의 안 번 호	955	제출년월일 : 1994. 1.25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규모		비고	폭원(m)	연장(m)	기정 철도	일반철도 (용산선) 효창역	용산구 문배동 3의 7~용문동 5의 187		12.3	1,113	용산~효창간 반복선 설치로 폭원확장 (12.3→16.9~29.2m)	변경	"	"	"	12.3 16.9~29.2	1,113		역명	역사형식	환승노선	비고	용산	지상역사(현 용산역)	경인선, 경원선, 경수선	환승역	효창	신하역사(신설)			의 안 번 호	957	제출년월일 : 1994. 1.25.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의 안 번 호	955	제출년월일 : 1994. 1.25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규모		비고																																					
				폭원(m)	연장(m)																																						
기정 철도	일반철도 (용산선) 효창역	용산구 문배동 3의 7~용문동 5의 187		12.3	1,113	용산~효창간 반복선 설치로 폭원확장 (12.3→16.9~29.2m)																																					
변경	"	"	"	12.3 16.9~29.2	1,113																																						
역명	역사형식	환승노선	비고																																								
용산	지상역사(현 용산역)	경인선, 경원선, 경수선	환승역																																								
효창	신하역사(신설)																																										
의 안 번 호	957	제출년월일 : 1994. 1.25.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상비가 소요되므로, 환경시설대에서 제외 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	변경코자 함.																								
3. 주요입안 요지																									
○ 입안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등급</th><th>류별</th><th>폭 원</th><th>연 장</th><th>기 점</th><th>연 장</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기정</td><td>대로</td><td>3류</td><td>26~63</td><td>19,340</td><td>성산동 561-1</td><td>노원구 공릉동 284-2</td><td>홍제동 278 의 3필지 환경 시설대 제외 (감 159m<sup>3</sup>)</td></tr> <tr> <td>변경</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구분	등급	류별	폭 원	연 장	기 점	연 장	비 고	기정	대로	3류	26~63	19,340	성산동 561-1	노원구 공릉동 284-2	홍제동 278 의 3필지 환경 시설대 제외 (감 159m <sup>3</sup> )	변경	"	"	"	"	"	"	
구분	등급	류별	폭 원	연 장	기 점	연 장	비 고																		
기정	대로	3류	26~63	19,340	성산동 561-1	노원구 공릉동 284-2	홍제동 278 의 3필지 환경 시설대 제외 (감 159m <sup>3</sup> )																		
변경	"	"	"	"	"	"																			
○ 지역 현황 - 도시계획 사항 : 일반주거지역 -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 없음.																									
4. 참고 사항																									
○ 공람공고 : '93.12.9~'93.12.22 ○ 도로결정 : '92.7.20(서울특별시 고시 제242호) .....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 도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3. 입안 요지 ○ 도시계획 용도지역(생산녹지→일반주거지역) 변경결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용 도 지 역</th><th>위 치</th><th>면 적(m<sup>2</sup>)</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기 정</td><td>생산녹지지역</td><td>공항동 1227번지</td><td>102,000</td><td>공항주민 이주단지 조성 예정지</td></tr> <tr> <td>변 경</td><td>일반주거지역</td><td>"</td><td>102,000</td><td></td></tr> </tbody> </table>		구 분	용 도 지 역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생산녹지지역	공항동 1227번지	102,000	공항주민 이주단지 조성 예정지	변 경	일반주거지역	"	102,000										
구 분	용 도 지 역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생산녹지지역	공항동 1227번지	102,000	공항주민 이주단지 조성 예정지																					
변 경	일반주거지역	"	102,000																						
○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결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용 도 지 역</th><th>위 치</th><th>면 적(m<sup>2</sup>)</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사업 계획</td><td>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td><td>공항동 1227번지</td><td>102,000</td><td>공항주민 이주단지 조성 예정지</td></tr> </tbody> </table>		구 분	용 도 지 역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사업 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공항동 1227번지	102,000	공항주민 이주단지 조성 예정지														
구 분	용 도 지 역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사업 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공항동 1227번지	102,000	공항주민 이주단지 조성 예정지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시설명</th><th>폭 원(m)</th><th>내 용</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변 경</td><td>도로</td><td>40</td><td>1,020→690m</td><td>남부순환도로 일부구간 위치변경</td></tr> </tbody> </table>		구 분	시설명	폭 원(m)	내 용	비 고	변 경	도로	40	1,020→690m	남부순환도로 일부구간 위치변경														
구 분	시설명	폭 원(m)	내 용	비 고																					
변 경	도로	40	1,020→690m	남부순환도로 일부구간 위치변경																					

<p>○ 지역 현황</p> <p>도시 계획 사항 : 생산 농지 지역 □ 공람 공고 시 주민 의견 : 없음.</p> <p>4. 추진 경위</p> <p>○'76. 6.11 : 도시 계획 시설(공항) 결정 ○'89.12. 4 : 2차 이주 사업 시행 위탁 협약(교통부-서울시) ○'90. 6.23 : 재위임 협약(서울시-강서구) ○'92.11.24 : 주민 이주 대책 시행 공고(강서구) ○'93.12.29 :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 요청(강서구)</p> <p>3. 주요 요지</p> <p>○ 주택 개량재 개발 구역 지정 조서</p>	<p>.....</p> <p>동소문 주택 개량재 개발 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px;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padding: 2px;">의안</td><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center;">960</td></tr> <tr> <td style="padding: 2px;">번호</td><td></td></tr> </table> <p>제출 년월일 : 1993. 1.25.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p> <p>1. 건명 : 동소문 주택 개량재 개발 구역 변경 지정 2. 제안 이유 : 동소문 주택 개량재 개발 구역 지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 코자 하는 것임</p>	의안	960	번호									
의안	960												
번호													
	<table border="1" style="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width: 15%;">구역명</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width: 45%;">위치</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border-bottom: 1px solid black;">면적(m<sup>2</sup>)</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width: 15%;">비고</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정</th> <th style="text-align: center;">변경</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동소문</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북구 동소문동4가 278번지 일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283,390</td> <td style="text-align: center;">318,856</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 추가 증 35,466m<sup>2</sup></td> </tr> </tbody> </table>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동소문	성북구 동소문동4가 278번지 일대	283,390	318,856	일부 추가 증 35,466m <sup>2</sup>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동소문	성북구 동소문동4가 278번지 일대	283,390	318,856	일부 추가 증 35,466m <sup>2</sup>									
<p>○ 추가 구역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 35,466m<sup>2</sup>(시유지 30,713.4m<sup>2</sup>)</li> <li>- 건축 물 : 252동(유허가 196동, 무허가 56동)</li> <li>- 가구 수 : 550세대(가옥주 252, 세입자 298)</li> <li>- 도시 계획 사항 : 일반 주거 지역, 주차장 정비 지구</li> <li>- 주민 동의 : 79.8%</li> </ul> <p>33. 清潭洞 16番地에서 37番地 간用途地域變更要求에 관한 請願(李秉守議員 紹介)</p> <p>34. 敦岩洞 535番地一带 風致地區解除要求에 관한 請願(朴別根議員 紹介)</p> <p>35. 南峴洞 地域公園用地解除要求에 관한 請願(李迎春議員 紹介)</p> <p>36. 新林洞 598番地一带 公園用地解除要求에 관한 請願(姜晶錫議員 紹介) (17時 57分)</p> <p>○ 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32項 清潭洞 16番地~37番地 간 用途地域變更要求에</p>	<p>關한 請願, 議事日程 第33項 敦岩洞 535番地一帶 風致地區解除要求에 關한 請願, 議事日程 第34項 南峴洞 地域公園用地解除要求에 關한 請願, 議事日程 第35項 新林洞 598番地一帶 公園用地解除要求에 關한 請願, 이상 4件을 一括上程합니다. (議事権 3打)</p> <p>都市整備委員會 丁寅燮議員님 나오셔서 審查結果를 一括하여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丁寅燮議員 都市整備委員會所屬 丁寅燮議員입니다.</p> <p>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委員이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查한 請願 審查結果를 報告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p> <p>이번 第68回 臨時會 中 우리 都市整備委員會에 繫留된 請願은 모두 8件으로 이 請願 등은 都市計劃과 關聯하여 住民들의 간곡한 要望이 담겨 있는 民願들로써 우리 委員會에서는 內容別로 現地踏査는 물론 執行部와 關聯 住民의 意見까지 소상히 듣는 등 가능</p>												